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임회무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
○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와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(안 제10조의 2)

○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, 지상변압기함을 추가(안 제11조)

○ 광고물 등의 표시물건에서 “지상변압기함”을 삭제(안 제20조)

4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와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타 광역시·도의 경우 조례로 공중전화부스 및 지상변압기함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기업인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. 따라서 타 광역시·도와 형평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